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64호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52호

2026년도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 및 지능형농작업로봇핵심기술개발 협업과제 시행계획 통합공고 재공고

「2026년도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사업(농식품부), 지능형농작업로봇핵심기술개발(농진청)의 협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재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1 농식품부 · 농진청 협업과제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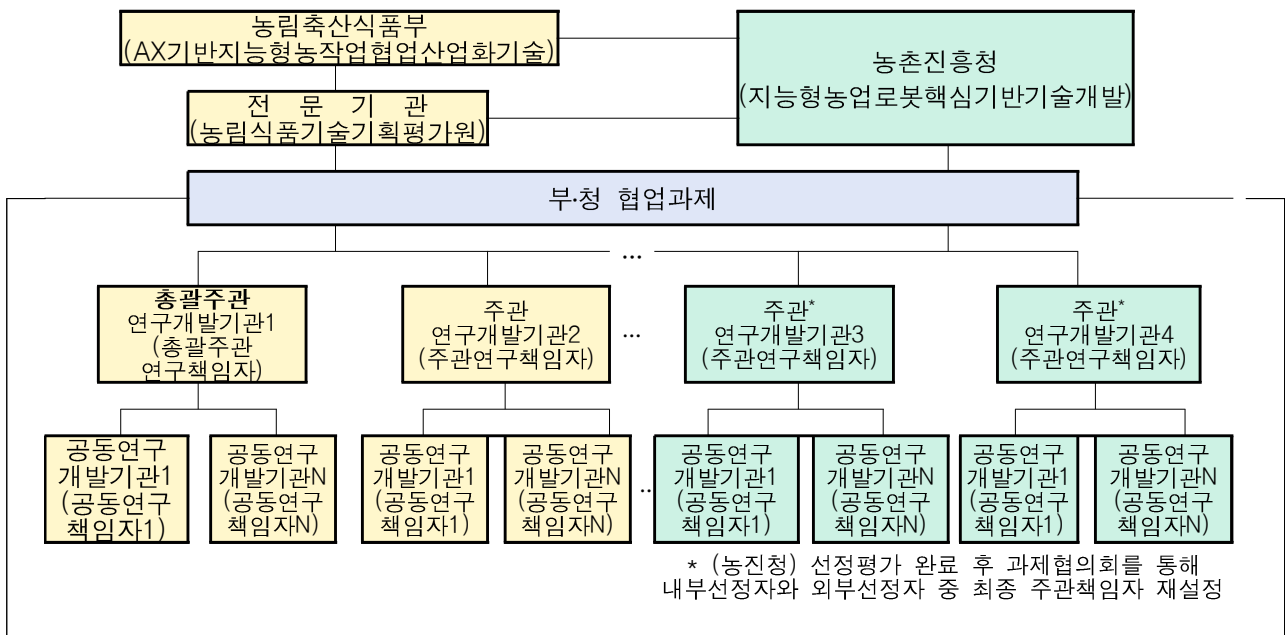
- 농업·농촌 노동력 감소 난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로봇 전환(RX) 기술 기반의 농업 로봇·드론 활용 및 협업기술 산업화

□ 대상 사업

소관부처	내역사업명	주요 내용	과제수	'26년 예산 (백만원)
농식품부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논, 밭, 과수 전주기 주요작업 로봇 및 고강도·반복 작업에 대한 협업·군집 기술 등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2	1,450
농촌 진흥청	AI기반 농업용 로봇 지능형 농작업 요소기술개발	농업환경(논, 밭, 과수 등) 특성에 따른 농업용 로봇을 위한 센서융합 기술 및 로봇 플랫폼과 작업기 연동기술 등 지능형 농작업 요소기술 개발	2	300

□ 세부 추진 방법

- 부·청 협업과제의 과제 추진 유형은 여러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하는 통합형 과제
 - 협업과제에 지원하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업과제 RFP를 구성하는 모든 연구기관을 구성하여 지원하되 부·청 각각의 사업 및 과제에 개별 접수
 - ※ 협업과제 구성여부가 지원 시 미확인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 농촌진흥청 내부과제(청 소속기관 연구자가 수행)는 컨소시엄 구성에서 제외
- 협업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업과제를 구성하는 부·청 과제에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과제로 지원 불가
 - ※ 협업과제별로 1개의 과제에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가능
- 협업과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는 부·청 각 과제별 참여 형태(주관·공동·위탁)와 무관하게 1개 과제에만 지원 가능
 - ※ (예시) 협업과제가 농식품부 2개, 농진청 2개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4개의 과제 중 1개의 과제에만 지원 가능
- 별도 총괄과제는 없는 구조로, 협업과제 중 총괄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연구과제 수행 및 총괄조정 역할을 동시 수행 ※ 총괄과제는 3지원대상 참고



[부·청 협업과제 추진체계]

- 개별 접수된 부·청 협업과제 내 모든 과제는 동일한 평가단에서 평가하여 컨소시엄 단위로 선정 ※ 평가절차 및 기준은 세부공고 참고

□ 단계 구성

과제별 총 연구기간	1단계	2단계
4년 9개월	1년 9개월	3년
3년 9개월	1년 9개월	2년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2

공고 개요

□ 공고 규모 : 연구개발비 1,750백만 원 이내, 1개 협업과제

(단위 : 개, 백만원)

협업과제 목록	지원유형	지원규모(이내)			
		구성 과제 수	'26년 연구비		
			농식품부	농진청	합계
[협업-지능형01] 무인 농장 전환을 위한 자율 트랙터 군집 협업 기술개발	지정공모, 자유공모	4	1,450	300	1,750
합 계		4	1,450	300	1,750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공고 기간 : 2026. 3. 9.(월) ~ 3. 18.(수), 10일간

□ 접수 기간 : 2026. 3. 9.(월) ~ 3. 18.(수) 16:00:00까지

3

지원 대상

□ 공모과제 : 1개 협업과제(총 4개 연구개발과제)

사업명	(농식품부)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 (농진청) 지능형농업로봇핵심기반기술개발					
협업 과제명	(협업-지능형01) 무인 농장 전환을 위한 자율 트랙터 군집 협업기술개발			연구 기간	3년 9개월	
과제 구성	협약기관	구분	과제명	참여 형태	연구비 (백만원)	
					26년	총
	농식품부	과제A (총괄)	무인·자율 트랙터 간 다중 협동형 제어 기술개발	주관	700	3,499
	농식품부	과제B	트랙터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을 위한 온디바이스 AI기술 개발	주관	750	3,750
	농진청	과제C	ISO 18497 기반 자율주행 농업기계 표준화 기술개발	주관 /공동	200	1,001
	농진청	과제D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농작업 확대를 위한 기술 검정 표준화 연구	주관 /공동	100	499
계					1,750	8,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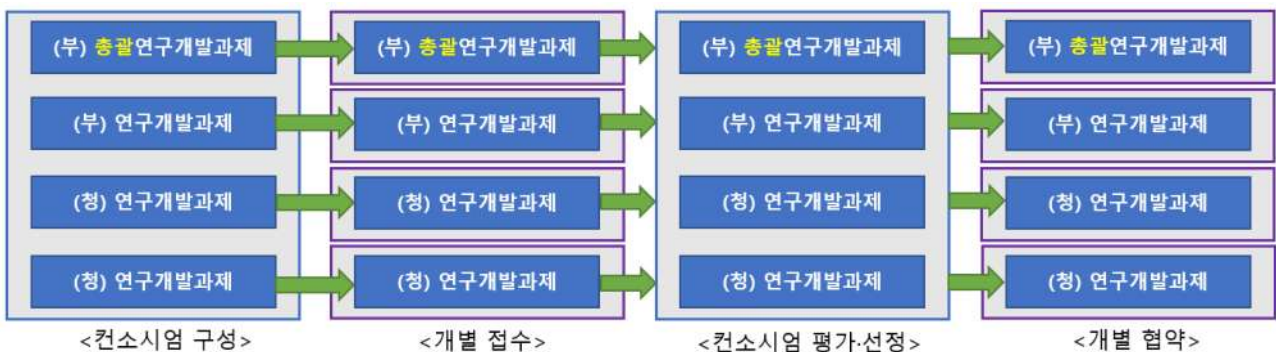
4

협업과제 지원 및 선정절차

□ 접수

- 부·청 협업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과제 접수는 협약기관 기준으로 농기평과 농진청으로 구분하여 각각 IRIS 시스템에 접수
 - 총괄연구기관 : ①부·청 협업과제 연구개발계획서(붙임3)와 ②총괄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농식품부 총괄 붙임 4, 농촌진흥청 총괄 붙임 5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를 작성하여 IRIS 시스템에 제출
 - ※ 협업과제 목록 붙임 1 참조
 - 부·청 협업과제 구성하는 연구기관 : ①과제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농식품부 서식 붙임 4, 농촌진흥청 서식 붙임 5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및 ②총괄주관기관에서 작성한 협업연구개발계획서(붙임 3)를 추가로 첨부
 - ※ 총괄연구기관 이외의 협업과제를 구성하는 연구개발 기관은 총괄기관이 작성한 협업과제 계획서를 모두 업로드하여 접수시 컨소시엄 구성이 확인되어야 평가대상으로 확정(붙임 3)

□ 평가절차



[부·청 협업과제 구성 및 선정절차]

- 통합형 연구개발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컨소시엄(총괄과제(부)+과제(부)+과제(청))의 평가는 동일 평가단에서 평가
 - ※ 부·청 협업과제 지원한 연구팀은 협업과제 기준으로 발표평가 당일 모두 참석

- 컨소시엄은 혁신법에 따라 '책임자'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구성을 원칙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가능

※ 농진정의 과제는 내부과제와 외부과제를 구분하여 응모/선정평가를 진행하되, 선정 후 과제협의회에서 최종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정 및 한 개의 과제로 협약 추진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서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발표평가와 서면평가의 비율은 6:4의 비율 적용

□ 평가점수 산출

- 과제별 평가점수에 협업과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컨소시엄의 종합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

※ 협업과제를 구성하는 일부과제의 점수가 높은 경우라도, 협업과제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컨소시엄의 종합점수가 높은 협업과제 연구팀을 모두 일괄 선정

- 과제별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산술평균에 가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점수로 산출
- 협업과제 컨소시엄의 최종점수는 구성하는 과제 수에 따라 과제별 평가점수에 총괄과제 및 과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 컨소시엄의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협업과제 지원대상 우선순위 도출

협업과제 구성 과제수		2개	3개	4개
가중치	총괄과제	0.6	0.4	0.4
	그 외과제	0.4	0.3	0.2

* 4과제로 구성된 협업과제의 종합점수 =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 × 0.4) + ∑(그 외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 × 0.2)

* 3과제로 구성된 협업과제의 종합점수 =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 × 0.4) + ∑(그 외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 × 0.3)

* 2과제로 구성된 협업과제의 종합점수 =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 × 0.6) + (그 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 × 0.4)

- 협업과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일부 연구개발과제의 종합점수 또는 컨소시엄의 최종점수가 지원제외 대상(60점 미만) 일 경우 해당 컨소시엄은 탈락

5

문의처 및 기타

□ 이 외 부·청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서식 등 세부내용은 각 기관별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농식품부 지원대상 과제

문의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농기평 융복합사업실	061-338-9752

○ 농촌진흥청 지원대상 과제

문의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모과제(RFP) 내용 등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	063-238-08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등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과	063-238-0811, 0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농기평 농업과학기술TF	061-338-9783, 97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농기평 융복합사업실	061-338-9752

○ (IRIS 접수관련) 범부처 통합연구비 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붙임 1> 협업과제 목록	7
<붙임 2> 부·청 협업과제 RFP	8
<붙임 3> 협업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9
<붙임 4> 농식품부 협약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모음	25
<붙임 5> 농진청 협약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모음	62

**【별첨 1】 농식품부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세부 추진내용**

**【별첨 2】 농촌진흥청 지능형농작업로봇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세부 추진내용**

붙임 1**협업과제 목록**

작업 단계	연구개발 내용	'26년 예산
<논> 지능형 농작업 로봇·드론 기술		1,750
경운 정지	[협업-지능형01] 무인 농장 전환을 위한 자율 트랙터 군집 협업 기술개발	1,750
	[부] (총괄) 무인·자율 트랙터 간 다중 협동형 제어 기술개발	700
	[부] 트랙터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기술 개발	750
	[청] ISO 18497 기반 자율주행 농업기계 표준화 기술개발	200
	[청]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농작업 확대를 위한 기술 검정 표준화 연구	100

붙임 2

부.청 협업과제 RFP

사업명	(농식품부)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 (농진청) 지능형농업로봇핵심기반기술개발					
협업 과제명	(협업-지능형01) 무인 농장 전환을 위한 자율 트랙터 군집 협업기술개발				연구 기간	3년 9개월
과제 구성	협약기관	구분	과제명	참여 형태	연구비 (백만원)	
					26년	총
	농식품부	과제A (총괄)	무인·자율 트랙터 간 다중 협동형 제어 기술개발	주관	700	3,499
	농식품부	과제B	트랙터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을 위한 온디바이스 AI기술 개발	주관	750	3,750
	농진청	과제C	ISO 18497 기반 자율주행 농업기계 표준화 기술개발	주관/ 공동	200	1,001
	농진청	과제D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농작업 확대를 위한 기술 검정 표준화 연구	주관/ 공동	100	499
계					1,750	8,749

*농진청 과제의 참여형태는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과제협의회에서 최종 확정

연구목표	○ 무인 농장 전환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작업 트랙터 협동 농작업 기술 개발 및 표준 기반 자율작업 트랙터 검·인증 체계 구축
협업 필요성	○ 트랙터의 자율 협동 제어, 온디바이스 AI, 표준, 성능 검정 등 상호 연계된 핵심 기술의 통합적인 개발·검증이 요구되므로 협업 과제 추진 필요
연구 및 산업 동향	○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은 '25년 22억 달러에서 '30년 52억달러로 연평균 18.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Mordor Intelligence, 2025) ○ 글로벌 선진사(John deere 등)는 다수의 동종·이종 농기계 협업 작업이 가능한 농기계 개발 완료 및 상용화를 통한 군집 협업 작업에 사용 ○ 국내의 경우 단일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의 자동조향 및 작업기 제어가 가능한 Lv. 3 단계 수준으로, 군집 협업 농기계 기술 부족
주요 협업내용	○ (과제A, 총괄) 무인·자율 트랙터 간 다중 협동형 제어 기술 개발 - 각 세부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한 다중 협동 트랙터 제어 기술 ○ (과제B) 트랙터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기술 개발 - 세부-3의 자율주행 농기계 성능 및 안전 시험 방법을 고려한 핵심 기술

	<p>○ (과제C) ISO 18497 기반 자율주행 농업기계 표준화 기술 개발 - 총괄·세부-1 개발 내용을 고려한 자율주행 농기계 안전 요구 기술</p> <p>○ (과제D)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농작업 확대를 위한 기술 검정 표준화 연구 - 세부-2에서 부합화한 표준 기반 기술 농기계 성능 및 안전 평가 방법</p> <p>○ 핵심 목표 성능</p> <table border="1" data-bbox="347 600 1398 712"> <thead> <tr> <th>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th> <th>단위</th> <th>달성목표</th> </tr> </thead> <tbody> <tr> <td>협동작업 효율 향상률¹⁾</td> <td>%</td> <td>≥ 45</td> </tr> <tr> <td>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 농작업* 효율 향상률²⁾</td> <td>%</td> <td>≥ 25</td> </tr> </tbody> </table> <p>1) 기존 한 대의 자율주행 트랙터 대비 두 대 트랙터의 협동 자율작업에 따른 작업효율(h/10a) 향상률 2) 기존 자율주행 대비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 농작업 효율(h/10a) 향상률 * 자율 농작업 종류는 연구팀에서 제시</p>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목표	협동작업 효율 향상률 ¹⁾	%	≥ 45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 농작업* 효율 향상률 ²⁾	%	≥ 25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목표									
협동작업 효율 향상률 ¹⁾	%	≥ 45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 농작업* 효율 향상률 ²⁾	%	≥ 25									
성능목표 설정사유	<p>○ 주요 성능지표는 해외 선진사(John deere社, 미국) 기술과 동등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p>										
연구팀 구성요건	<p>○ 상기 연구과제 관련하여 선행연구결과(특히, 시제품 등)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권장</p> <p>○ 농식품부 과제는 산업화할 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필수</p>										
협업성과	<table border="1" data-bbox="347 1205 1417 1485"> <thead> <tr> <th>핵심성과</th> <th>전략성과</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술이전 1건 이상(건당 50백만원 이상) ○ 농작업 로봇 핵심기술 개발 (환경인식모델, 농작업 의사결정) 2건 이상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기술의 공인 시험방법 제시 ○ 농작업 대체로봇 플랫폼 또는 농기계 협업기술 상용화 1건 이상 ○ 표준화 1건 이상 </td> </tr> </tbody> </table>		핵심성과	전략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술이전 1건 이상(건당 50백만원 이상) ○ 농작업 로봇 핵심기술 개발 (환경인식모델, 농작업 의사결정) 2건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기술의 공인 시험방법 제시 ○ 농작업 대체로봇 플랫폼 또는 농기계 협업기술 상용화 1건 이상 ○ 표준화 1건 이상 					
핵심성과	전략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술이전 1건 이상(건당 50백만원 이상) ○ 농작업 로봇 핵심기술 개발 (환경인식모델, 농작업 의사결정) 2건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기술의 공인 시험방법 제시 ○ 농작업 대체로봇 플랫폼 또는 농기계 협업기술 상용화 1건 이상 ○ 표준화 1건 이상 										
Keyword	한 글	자율주행 트랙터, 협동작업, 온디바이스 AI, 운영센터, ISO 18497									
	영 문	Autonomous tractor, Cooperative operation, On-device AI, Operation center, ISO 18497									

협업과제연번	협업-지능형01	구분	과제A(총괄)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안과제명	무인·자율 트랙터 간 다중 협동형 제어 기술 개발		
과제개요	사업명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 산업화기술개발	내역사업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과제유형	연구기간	총 정부지원연구비 '26년 정부지원연구비
	지정공모	3년 9개월	3,499 백만원 700 백만원
	기술분류	RC0103 농업 자동화·로봇화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연구목표	○ 두 대 이상의 무인 자율트랙터가 단일 필지의 농작업 환경에서 상호 인식 및 협동 주행을 수행할 수 있는 다중 협동형 제어 기술 개발
필요성	○ 농촌 노동력 부족 심화와 국내 농업환경의 규모화·첨단화에 따라 대규모 면적의 트랙터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솔루션 기반의 글로벌 시장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중 트랙터 협동 운용 기술 개발 필요
연구 및 산업 동향	○ 글로벌 선진사(John deere 등)는 동종 및 이종 농기계 협동작업이 가능한 자율 작업 기술 상용화 및 기술 고도화 추진 ○ 국내는 단일 자율주행 트랙터 상용화 연구가 일부 진행중이나, 다수 농기계의 협동 자율작업 제어 기술은 검토 초기 수준
주요 연구내용	○ 자율 트랙터 다중 협동형 제어 기술 개발 - Vision 인식 기반 동적/정적 장애물에 대한 실시간 충돌 회피 및 협동 자율작업 경로 재계획 기술* * 단일 필지에서 두 대 이상의 트랙터 협동작업 - Leader-Follower 트랙터 협동 작업 제어 기술 - 단일 필지내 협동 자율작업 최적화 계획 생성 및 제어 기술 ○ 다중 협동작업 관제 및 통신 연동 기술 개발 - V2V(Vehicle to Vehicle) 통신 표준 기반 차량간 실시간 데이터 교환 기술 - 관제센터-트랙터 간 통합 제어 및 상태 모니터링 기술 - 다중 자율작업 트랙터의 실시간 개체관리, 작업 이력 추적, 협동작업 경로 생성 등 관제 기술 - 웹·모바일 연계 협동작업 트랙터 최적운용 통합관리 솔루션 구축 및 GUI 기술 ○ 다중 트랙터 작업 품질 디지털 지도 생성 기술 개발 - 트랙터 작업성능 데이터 기반 작업 품질(작업 깊이, 균일도 등) 정량화 기술 - 트랙터 작업 품질의 디지털 지도 생성 기술 - 작업 품질 디지털 지도 기반 다중 트랙터 협동작업 성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 트랙터간 협동작업 성능 및 안전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작업 조건에서 다중 트랙터의 협동작업 성능 - ISO 18497 기반 다중 트랙터의 주행·추종 작업에 따른 안전성 ○ 핵심 목표 성능 <table border="1" data-bbox="363 436 1385 571"> <thead> <tr> <th colspan="2">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th> <th>단위</th> <th>달성목표</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트랙터 간 협동 주행 위치 정확도</td> <td>m</td> <td>$\leq \pm 0.05$</td> </tr> <tr> <td>2</td> <td>작업지 미 경작율</td> <td>%</td> <td>≤ 7</td> </tr> <tr> <td>3</td> <td>협동작업 효율 향상률¹⁾</td> <td>%</td> <td>≥ 45</td> </tr> </tbody> </table> <p>1) 기존 한 대의 자율주행 트랙터 대비 두 대 트랙터의 협동 자율작업에 따른 작업효율(h/10a) 향상률</p>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목표	1	트랙터 간 협동 주행 위치 정확도	m	$\leq \pm 0.05$	2	작업지 미 경작율	%	≤ 7	3	협동작업 효율 향상률 ¹⁾	%	≥ 45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목표														
1	트랙터 간 협동 주행 위치 정확도	m	$\leq \pm 0.05$														
2	작업지 미 경작율	%	≤ 7														
3	협동작업 효율 향상률 ¹⁾	%	≥ 45														
성능목표 설정사유	○ 주요 성능지표는 해외 선진사(John deere社, 미국) 기술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																
연구팀 구성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연구과제 관련하여 선행연구결과(특히, 시작품 등)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권장 ○ 산업화 할 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필수 																
성과활용	<p><핵심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 특허 등록 4건 이상(SMART 값 BBB이상), SCI 논문(평균 mrnIF 75 혹은 IF 3.0 이상) 3건 이상, 기술이전 5건이상(건당 50백만원 이상 우수기술이전 1건 의무), 기술료 65백만원 이상, 제품화 2건 이상, 매출액 1,000백만원 이상, 고용창출 5명 이상, 농작업 로봇 핵심기술 개발 (환경인식모델, 농작업 의사결정) 1건 이상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기술이전 1건 이상, 기술료 50백만원 이상, 매출액 10,000백만원 이상 <p><전략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기술의 공인 시험방법 제시 ○ 농작업 대체로봇 플랫폼 또는 농기계 협업기술 상용화 1건 이상 																
Keyword	한 글	자율주행 트랙터, 협동작업, 트랙터 제어, 운영센터, 경로 재계획															
	영 문	Autonomous tractor, Cooperative operation, Tractor control, Operation center, Path re-planning															

협업과제연번	협업-지능형01		구분	과제B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안과제명	트랙터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기술 개발			
과제개요	사업명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 산업화기술개발	내역사업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과제유형	연구기간	총 정부지원연구비	'26년 정부지원연구비
	지정공모	3년 9개월	3,750백만원	750백만원
	기술분류	RC0103 농업 자동화·로봇화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연구목표	○ AI 전용 칩셋 기반 온디바이스 영상인식(장애물/작물 등) 및 센서퓨전 제어기술 개발을 통해 대규모 농지에서도 통신 의존 없이 초저지연 트랙터 자율주행·자율작업 기술 구현
필요성	○ 농업 노동력 감소 대응을 위하여 자율작업 트랙터가 개발중이나 기존 기술은 통신지연·환경변화에 취약하므로 현장 내 즉시 판단·제어가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작업 기술 확보 시급
연구 및 산업 동향	○ 글로벌 선진사(John deere 등)는 농기계 자율주행·작업 기술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중심 구조에서 Edge·온디바이스 AI 기반 구조로 전환 ○ 국내는 아직까지 RTK-GPS 기반 경로 추종 및 작업 제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율작업 구현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적용은 검토 초기 수준
주요 연구내용	○ AI 전용 칩셋 기반 온디바이스 카메라 모듈 개발 - 40 TOPS(Trillions of Operations Per Second)급 이상의 AI전용처리장치를 탑재한 비전 카메라 설계 - 경로탐색, 장애물 인식, 환경 인식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상신호처리장치 및 AI전용처리장치 통합 기술 - 클라우드 연산 의존 없이 온디바이스에서 영상 입력-추론-판단-출력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영상처리 체계 구축 - 진동(1~5 g)·온도(-10~+70 °C)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방진·방수 성능과 렌즈 오염 대응 기능을 갖춘 환경 적응형 모듈 설계 기술 ○ 초저지연 AI 영상처리 SW 및 경량화 모델 개발 - 농지 환경(논·밭·수로·작물 경계 등)을 반영한 AI 모델 개발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경로탐색, 장애물 인식, 환경 인식 등 목적별 AI 모델 - 영상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AI 모델 경량화 기술 ○ 온디바이스 AI 자율작업 트랙터의 디지털 트윈 모델 개발 - 온디바이스 AI 모듈과 트랙터 제어 시스템의 상호작용 재현이 가능한 가상환경 기반 디지털 트윈 모델 - 농업 환경 조건을 반영한 자율작업 트랙터 성능 예측 기술

	<p>- 실작업 데이터를 반영한 디지털 트윈 모델을 통한 온디바이스 AI 및 자율작업 트랙터 제어 기술 성능 평가 프로세스 확립</p> <p>○ 온디바이스 AI 기반 트랙터 자율주행·작업 성능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주행·작업 제어 기술의 트랙터 적용성 평가 - GPS/IMU + AI 센서 융합을 통한 정밀 위치추정 및 페루프 제어 성능 평가 - 대규모 농경지 현장 실증을 통한 자율주행·작업 성능 검증 및 오차·응답시간·처리속도 분석 결과 기반 개선안 도출 <p>○ 핵심 목표 성능</p> <table border="1" data-bbox="363 629 1386 763"> <thead> <tr> <th colspan="2">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th> <th>단위</th> <th>달성목표</th> </tr> </thead> <tbody> <tr> <td>1</td> <td>AI 추론 지연시간¹⁾</td> <td>ms</td> <td>≤ 50</td> </tr> <tr> <td>2</td> <td>장애물* 검출 정확도</td> <td>%</td> <td>≥ 98</td> </tr> <tr> <td>3</td> <td>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 농작업* 효율 향상률²⁾</td> <td>%</td> <td>≥ 25</td> </tr> </tbody> </table> <p>1) 영상입력 후 추론 결과 출력까지의 평균 처리 시간 2) 기존 자율주행 대비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 농작업 효율(h/10a) 향상률 * 장애물 및 자율 농작업 종류는 연구팀에서 제시</p>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목표	1	AI 추론 지연시간 ¹⁾	ms	≤ 50	2	장애물* 검출 정확도	%	≥ 98	3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 농작업* 효율 향상률 ²⁾	%	≥ 25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목표														
1	AI 추론 지연시간 ¹⁾	ms	≤ 50														
2	장애물* 검출 정확도	%	≥ 98														
3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 농작업* 효율 향상률 ²⁾	%	≥ 25														
<p>성능목표 설정사유</p>	<p>○ 주요 성능지표는 해외 선진사(John deere社, 미국) 기술과 동등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p>																
<p>연구팀 구성요건</p>	<p>○ 상기 연구과제 관련하여 선행연구결과(특허, 시작품 등)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권장</p> <p>○ 산업화 할 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필수</p> <p>○ 온디바이스 AI 첨단기술 상용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연구기관(미국, 일본 등)과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기술력 확보</p>																
<p>성과활용</p>	<p><핵심성과></p> <p>○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 특허 등록 4건 이상(SMART 값 BBB이상), SCI 논문(평균 mrnIF 75 혹은 IF 3.0 이상) 3건 이상, 기술이전 5건이상(건당 50백만원 이상 우수기술이전 1건 의무), 기술료 60백만원 이상, 제품화 2건 이상, 매출액 1,000백만원 이상, 고용창출 5명 이상, 농작업 로봇 핵심기술 개발 (환경인식모델, 농작업 의사결정) 1건 이상</p> <p>○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기술이전 1건 이상, 기술료 50백만원 이상, 매출액 10,000백만원 이상</p> <p><전략성과></p> <p>○ 상기 연구과제와 관련한 표준화 1건 이상</p>																
<p>Keyword</p>	<table border="1" data-bbox="343 1697 1430 1856"> <tr> <td>한 글</td> <td>자율주행 트랙터, 온디바이스 AI, 영상처리, 센서퓨전, 정밀농업</td> </tr> <tr> <td>영 문</td> <td>Autonomous tractor, On-device AI, Image processing, Sensor fusion, Precision agriculture</td> </tr> </table>	한 글	자율주행 트랙터, 온디바이스 AI, 영상처리, 센서퓨전, 정밀농업	영 문	Autonomous tractor, On-device AI, Image processing, Sensor fusion, Precision agriculture												
한 글	자율주행 트랙터, 온디바이스 AI, 영상처리, 센서퓨전, 정밀농업																
영 문	Autonomous tractor, On-device AI, Image processing, Sensor fusion, Precision agriculture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협업과제연번	협업-지능형01	구분	과제C
중앙행정기관명	농촌진흥청	전문기관명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명	지능형농업로봇핵심기반기술개발	내역사업명	AI 기반 농업용 로봇 지능형 농작업 요소기술개발
선정방식	과제공모(√), 과제비공모()	공모방식	지정공모(), 자유공모(√), 분야공모()

1. 제안요구사항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주제)명	ISO 18497 기반 자율주행 농업기계 표준화 기술개발
개요 (1000자 이내로 기술)	무인 농작업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군집 협업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호환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 연구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농업기계의 자율주행 기술은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반의 경로 생성 및 추종을 위한 직진 기능에 국한되어 있어, 무인 농장 전환을 위한 국제표준 기반의 기술 적용이 필요함 ○ 또한, 자율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국내 표준화가 요구됨 ○ 이에 국내 농업환경에 유연한 적용과 수출을 고려한 국제표준 기반의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군집 협업과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된 자율작업을 위한 표준화 연구가 필요
성과 목표	<p>【핵심 성과(정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공모 <p>*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외부/내부과제에서 각각 달성할 목표만 제시하여야 함</p> <p>【전략 성과(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공모
연구개발 내용	<p>【내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자율주행 농업기계 적용을 위한 ISO 18497 기반 안전 요구사항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용어와 기계적 요구사항 부합화 - 자율주행 농업기계 장애물 보호 대책 마련 기술 연구 -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자율주행 동작 기능 마련 기술 연구 -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안전 활용 매뉴얼 개발 <p>【외부】 ISO 18497 표준의 국내 부합화 표준 문서 및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안전 요구 기술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공모
활용 계획	<p>【활용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공모
연구팀 구성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선행 연구 경험이 있는 기관(대학, 연구소, 법인) 및 기업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분야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 관련 업무 경험 보유 기관
기타지원조건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든 과제는 과제선정평가위원회 의결사항을 수용해야 함 ○ 선행연구결과(특히, 시제품 등)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권장

2. 추진체계 및 예산/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필수참여 기관유형				공공기관			
예산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연도 : 200,000 천원 전 체 : 1,001,000 천원 				기술료 징수 여부* (사업화 대상)				징수 (√) 비징수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시험연구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802,000	-	-	-	-	-	-	802,000	-	802,000	199,000	
1단계	1년차	160,000	-	-	-	-	-	160,000	-	160,000	40,000	
	2년차	214,000	-	-	-	-	-	214,000	-	214,000	53,000	
2단계	1년차	214,000	-	-	-	-	-	214,000	-	214,000	53,000	
	2년차	214,000	-	-	-	-	-	214,000	-	214,000	53,000	
연구개발과제 특성·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술준비단계 착수:(3), 종료:(8) <input type="checkbox"/> 과제구조 :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input type="checkbox"/> 보안과제 : 일반 (√), 보안 () <input type="checkbox"/> 성과귀속 : 연구개발귀속 (√), 국가귀속() <input type="checkbox"/> 3책5공 적용 : 해당(√)/미해당()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단계 : 기초()/응용(√)/개발()/기타() <input type="checkbox"/> 과제유형 : 창의도전형()/성과창출형(√)/사회문제해결형()/법정임무형() <input type="checkbox"/> 국제공동과제 : 해당()/미해당(√) <input type="checkbox"/> 협업과제 : 기관간()/부서간()/미해당(√) <input type="checkbox"/> DMP대상여부 : 해당(√)/미해당() <input type="checkbox"/>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해당()/미해당(√)					

* 데이터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대상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 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이 필요한 과제로, 과제 응모시 데이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해당 과제 수행자는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 데이터의 전 과정을 농업R&D 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 등

- 담당부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고객센터
- 연 락 처 : 042-862-1500, 국번없이 1877-2041

○ 신규과제 접수 관련 문의

- 담당부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과학기술TF
- 연 락 처 : T.061-338-9783, 9784

○ 응모과제(RFP) 내용 관련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
- 연 락 처 : T.063-238-0857

○ 농업R&D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과 사업관리팀
- 연 락 처 : 063-238-0811, 0813

○ 선정평가 관련 문의

- 담당부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
- 연 락 처 : T.061-338-9752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협업과제연번	협업-지능형01	구분	과제D
중앙행정기관명	농촌진흥청	전문기관명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명	지능형농업로봇핵심기반기술개발	내역사업명	AI 기반 농업용 로봇 지능형 농작업 요소기술개발
선정방식	과제공모(√), 과제비공모()	공모방식	지정공모(√), 자유공모(), 분야공모()

1. 제안요구사항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주제)명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농작업 확대를 위한 기술 검정 표준화 연구
개요 (1000자 이내로 기술)	무인 농작업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군집 협업 기술의 안정적인 국내 활용과 보급을 위한 표준기반의 안전과 성능 방법과 기준 수립 연구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무인 농작업을 위한 자율주행 기반 농업기계와 트랙터의 경우 직진 주행에 대한 성능만을 평가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형태의 농업용 자율주행 기계와 로봇이 개발됨에 따라 국내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기반의 검·인증 체계 구축 필요 ○ 이에 국내 농업환경에 유연한 적용과 국내 무인 농업기계의 군집 협업과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된 자율작업의 성능과 안전을 확인할 평가 방법과 기준 필요
성과 목표	<p>【핵심 성과(정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26~'27): 논문표준화된 영향력지수(비SCIE) 50, ○ 2단계('28~'29): 논문표준화된 영향력지수(비SCIE) 50, 정책활용등록 건수 1건, 영농 정보기술 1건 <p>* 제시된 정량성과 목표는 내부와 외부 과제가 함께 달성할 최소 요구성과임. 필요시 과제 예산 총액 대비 목표 산출 가능(목표 설정 방법은 공고문 안내 참고)</p> <p>**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외부/내부과제에서 각각 달성할 목표만 제시하여야 함</p> <p>【전략 성과(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2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 농작업 농업기계 성능평가 시험 방법 및 기준 개발 - 무인 농작업 농업기계 안전 요구사항 평가 방법 및 기준 개발
연구개발 내용	<p>【내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18497 기반 자율주행 농업기계 성능 및 안전 검정 시험방법 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농작업 환경을 고려한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주행 요구사항 연구 -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주행 성능 기준 수립 연구 - 국내 농작업 환경과 자율주행 농업기계 특성을 고려한 장애물 형상과 크기 선정 연구 - 농경지 환경을 고려한 장애물 인식과 판단 최소 요구조건 선정 연구 <p>【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18497 기반 자율주행 농업기계 성능 시험 방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경로 추적 기반 주행 성능 시험 방법 및 장비 개발 -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군집 주행 성능 시험 방법 및 장비 개발 - 성능평가 시험 방법에 대한 적용성 평가 및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행 성능 평가 기준 수립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ISO 18497 기반 자율주행 농업기계 안전 평가 방법 개발 - 국내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안전 대책 및 적용성 평가 수립 - 시험 장애물 및 가상 경계 기반의 시험 환경 구축 - 안전 평가 방법에 대한 적용성 평가 및 고도화 - 안전 평가 기준 수립 및 제도화 방안 마련
활용 계획	<p>【활용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자율주행 농업기계 성능 및 안전 시험방법 및 기준 수립 통한 기반 마련 ○ (산업)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 기반과 표준 마련을 통한 국내 농산업체 기술 육성
연구팀 구성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선행 연구 경험이 있는 기관(대학, 연구소, 법인) 및 기업으로 구성 - 농업분야 관련 기술개발 및 농업기계 검정 및 표준 관련 업무 경험 보유 기관
기타지원조건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든 과제는 과제선정평가위원회 의결사항을 수용해야 함 ○ 선행연구결과(특히, 시제품 등)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권장

2. 추진체계 및 예산/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필수참여 기관유형		해당 없음						
예산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연도 : 100,000 천원 • 전 체 : 499,000 천원 		기술료 징수 여부* (사업화 대상)		징수 (✓) 비징수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시험연구비)		
		현금	현금	현물	지방자치단체		기타 ()				
총계	401,000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98,000
1단계	1년차	80,000						80,000		80,000	20,000
	2년차	107,000						107,000		107,000	26,000
2단계	1년차	107,000						107,000		107,000	26,000
	2년차	107,000						107,000		107,000	26,000
연구개발과제 특성·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술준비단계 착수:(3), 종료:(5) <input type="checkbox"/> 과제구조 :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input type="checkbox"/> 보안과제 : 일반 (✓), 보안 () <input type="checkbox"/> 성과귀속 : 연구개발귀속 (✓), 국가귀속() <input type="checkbox"/> 3책5공 적용 : 해당(✓)/미해당()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단계 : 기초()/응용(✓)/개발()/기타() <input type="checkbox"/> 과제유형 : 창의도전형()/성과창출형(✓)/사회문제해결형()/법정임무형() <input type="checkbox"/> 국제공동과제 : 해당()/미해당(✓) <input type="checkbox"/> 협업과제 : 기관간()/부서간()/미해당(✓) <input type="checkbox"/> DMP대상여부 : 해당(✓)/미해당() <input type="checkbox"/>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해당()/미해당(✓)						

* 데이터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대상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이 필요한 과제로, 과제 응모시 데이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해당 과제 수행자는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전 과정을 농업R&D 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 등

- 담당부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고객센터
- 연락처 : 042-862-1500, 국번없이 1877-2041

○ 신규과제 접수 관련 문의

- 담당부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과학기술TF
- 연 락 처 : T.061-338-9783, 9784

○ 응모과제(RFP) 내용 관련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
- 연 락 처 : T.063-238-0857

○ 농업R&D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과 사업관리팀
- 연 락 처 : 063-238-0811, 0813

○ 선정평가 관련 문의

- 담당부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
- 연 락 처 : T.061-338-9752

붙임 3

협업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별첨합니다.

협업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중앙행정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사업명	(농식품부) AX기반지능형농작업 협업산업화기술개발 (농진청) 지능형농업로봇핵심 기반기술개발
전문기관명(해당 시 반영)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촌진흥청		내역사업명 (해당 시 반영)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명	총괄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수	
구분	연구개발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수	보안등급
연구개발과제1						
연구개발과제2						
연구개발과제3						
연구개발과제n						

연구개발 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금	현물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총괄연구책임자	연락처	성명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직위	휴대전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실무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협약일 기준)

총괄연구책임자 : (인)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진흥청장·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및 내용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2) 단계별 목표 및 내용(해당 시 작성합니다)

<1단계>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n단계>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2.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총괄연구개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명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¹⁾)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²⁾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1-1)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1-2)¹⁾ 연구개발과제 2: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 1) 추가할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21

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3.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1)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현황

1) 연구개발과제 1

(1)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연구)책임자 ¹⁾	직급(위)	학위	전공	최근 연구개발과제(1개) 및 역할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공동					
	위탁					

* 1)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명(발생시점/역할)

2)¹⁾ 연구개발과제 2

* 1) 추가할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연구)책임자 ¹⁾	직급(위)	학위	전공	최근 연구개발과제(1개) 및 역할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공동					
	위탁					

* 1)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명(발생시점/역할)
	공동		
	위탁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종질지(80g/m²)]

5.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시험 연구비)
							지방자치단체			기타()						
과제	단계	연차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총괄 연구개발	1 단계	1														
		n														
	n 단계	1														
		n														
	소계	1														
		n														
연구 개발 과제 1	1 단계	1														
		n														
	n 단계	1														
		n														
	소계	1														
		n														
연구 개발 과제 n	1 단계	1														
		n														
	n 단계	1														
		n														
	소계	1														
		n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단위: 천원)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 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총괄 연구개발	현금																
	현물																
	소계																
연구 개발 과제 1	현금																
	현물																
	소계																
연구 개발 과제 n	현금																
	현물																
	소계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증질지(80g/m²)]

붙임 4

농식품부 협약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모음

연구개발계획서(일반과제용)		[] 신청용		보안등급					
		[] 협약용		일반[], 보안[]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공모: 지정공모[] 품목공모[] 분야공모[] 자유공모[]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과제선정 후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기관부담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외 지원금		
	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 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해당시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 요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농림식품 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과제선정 후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술성속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종료시점 목표()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연구과제 선정 후 해당시 작성)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프로그램, 저서/서적 등), 품종	기술인증	기술·제품 인증 등
학술성과	국내외 논문(SCI, 비SCI) 국내외 학술발표	인력양성	연구인력 양성
기술실시(이전)	기술실시(이전) 건수, 기술료	정책활용	정책건의, 정책반영 등
교육지도	교육지도(현장컨설팅)	홍보/전시	신문, 방송, 저널, 전시회 등
사업화	제품화, 고용창출, 매출발생 등	기타	국제화협력, 타 연구개발 활용 등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3) 표준화 전략

4)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전략

(2) 투자 계획

(3) 생산 계획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 *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이 참여 못 할 경우 필수 기재) 산업화·실용화를 위한 창업 계획
- **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조달계획(민간투자유치, 융자 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및 로드맵 등 제시 필수
-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인력 또는 생산비용 감소 등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절감 등 내용 포함 가능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1) 안전조치 이행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3)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시설번호	제LML00 - 00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00-00	

4)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7.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종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 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영문		국적 국가연구자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직장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종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 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요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 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단계		n단계		
											1년	n년	1년	n년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단계		n단계		
										1년	n년	1년	n년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직위		전자우편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직위		전자우편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 ¹⁾	사업화 형태 ²⁾	지역 ³⁾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구분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물	합계	
단 계	연 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 ¹⁾)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n														
	소계														
n	1														
	n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일반 ³⁾	특례 ⁴⁾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 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 ¹⁾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¹⁾)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²⁾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공통 요구자료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0000년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4) 0000년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6)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가점적용 신청서
	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성과 및 재무현황 (최근 5년, 기관별 작성)
2.	1)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지식재산권 확보·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외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외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 3) 표준화 전략: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 4) 사업화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 사업화 전략: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 (2) 투자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합니다.
 - (3) 생산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합니다.
 - (4) 해외시장 진출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가능)
 -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외국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기관 현황
 -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취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 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 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공을 이끈 실적(최근 5년간 실적)을 기재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공을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 (2) 연구시설 운영·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9.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별첨 서식> (농식품부) 연구개발계획서 공통 제출자료

(별첨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3) 0000년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별첨4) 0000년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별첨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첨6)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가점적용 신청서

(별첨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성과 및 재무현황(최근 5년, 기관별 작성)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p><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p> <p>√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3개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p> <p style="padding-left: 20px;">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p>		
<p><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p> <p>√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중인가?</p>		
<p><과제의 중복성></p> <p>√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p> <p style="padding-left: 20px;">단,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및 연구개발 단계(기초·응용·개발)등이 다른 경우에는 제외</p>		

<p><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p> <p>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p>		
<p>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p>		

[별첨 1]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해약,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및 제재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 나. 본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_____

신청년도 _____

연구과제명 _____

[별첨 2]

□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국가연구자번호	소속 (법인명 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개발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0000년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small>(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small>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small>(해당란에 “○”표시)</small>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small>(단위 : 백만원)</small>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신청금액	*00년 기관부 담연구개발비 금액 <small>(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small>	적용환율 <small>(외자일 경우)</small>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small>(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small>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small>(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small>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small>(해당란에 “○”표시)</small>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 (신규, 기존)</th> <th style="width: 20%;">성명 (채용예정자는 000)</th> <th style="width: 15%;">소속부서명</th> <th style="width: 20%;">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th> <th style="width: 15%;">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th> <th style="width: 15%;">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첨 4]

0000년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I. 사업 개요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구축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	기 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개발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0차년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 구개발비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4							
5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3							
4							
5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월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II.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작성 요망
-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 4]

[별첨-00]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00”에서 별첨번호 00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YYYY-MM-DD	심의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 정)	
------	------------	----------------------------	--

※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 (심의결과) 첨부 요망

[별첨 4]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 표시)	구 매	리 스 ¹⁾	렌 탈 ²⁾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금액	”00년 기관부담연구 개발비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지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 • 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 • 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별첨 4]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 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 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 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p>사업(연구) 부합성</p>	<p>○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p>
<p>국가전략 적 필요성</p>	<p>○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p>
<p>연구장비의 중복성</p>	<p>○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p>
<p>연구장비의 활용성</p>	<p>○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p>
<p>연구장비의 적정성</p>	<p>○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p>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p>○</p> <p>-</p> <p>※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p> <p>※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p> <p>※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 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p> <p>-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서,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p> <p>-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p> <p>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p> <p>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p> <p>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p> <p>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p> <p>-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p> <p>※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서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p> <p>※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p> <p>※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p>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p>○○○○(참여기업명)은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산업화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참여기업의 장:(기관명)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p>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가점적용 신청서

세부사업명	○○○○기술개발사업	신청가점	총00점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가점 적용 내용		적용기산일 (기준일)	적용 기간	가점	신청
1	소관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결과 “우수(평균 90점 이상)”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통보일 (접수마감일)	2년	5점	<input type="checkbox"/>
2	과학기술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거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3	소관 연구개발과제로써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 협약종료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4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연구책임자(최근 3년 이내 기술료 징수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기간내 최초 징수일 또는 계약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6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관련 신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단,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함)	인증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7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 받은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핵심성과와 관련된 기술을 이전한 연구기관이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함)	지정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8	그 밖에 장관이 신규과제 선정시 우대가 필요하다고 공고에서 정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적용근거	예시) · 농기평 ○○○○실-000(2020.00.00.): 최종평가(매우우수) [5점] · 농기평 ○○○○실-000(2020.00.00.): 과학기술대상(대통령표창) [3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증빙서류 0부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연구개발계획서 PART 1 >

① 표지 및 요약문

- 본 서식은 연구자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입력하는 표지 및 요약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식
- 별도 작성 및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접수 과정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입력 항목에 대해 사전 파악 권장
- 실무담당자는 참여연구원 중 한명으로 과제 등록을 도와줄 수 있으며,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를 등록

【별지 제8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용		보안등급						
		[] 협약용		일반[], 보안[]						
중앙행정기관명		농촌진흥청		사업명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세부사업명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공모: 지정공모[] 품목공모[] 분야공모[] 자유공모[]								
기술분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품목표준코드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시험연구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농 촌 진 흥 청 장 귀 하

앞표지 작성 요령(해당 작성요령은 제출 시 삭제)

*빛금친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
2.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4.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5. 선정방식: 지정공모에 [√] 표시하되, 공고문 또는 RFP에서 제시한 방식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1순위(50%이상)>=2순위>=3순위)
7. 품목표준코드: 품목표준코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1순위(50%이상)>=2순위>=3순위)
8.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9. 삭제
10.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1.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2.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과 국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13.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4)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5.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사업담당부서 실무담당자)
17.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

세부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품목표준코드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시험연구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종료시점 목표()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국제공동[], 창의도전[], 성과창출[], 사회문제해결[], 법정임무[]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빛금친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비중별 내림차순: 1순위(50%이상)>=2순위>=3순위)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5.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단계: RFP에 표시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8.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험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 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 단계: 9단계(사업화)
 - 6) 「농촌진흥청 14개 분야의 성숙도 단계」를 참고하여 착수 시점의 기술단계와 종료 시점의 목표 단계를 선택(해당 시 작성)
9.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사항 이 있을 경우 유형에 [√] 표시합니다.
10.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
11.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내용을 각각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

②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 본 서식은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부분으로 연구자가 작성하여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 (50페이지 이내 권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서식으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최종 서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필요
- ※ 본 설명문(노란색 음영)은 제출 시 불필요하며,
삭제 후 작성·제출**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 연구개발 목표

<최종목표>

<세부목표>

- 주관연구개발기관(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 위탁연구개발기관(책임자):

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개발기관(책임자):

<1단계 - 1년차(0000년)>

<1단계 - n년차(0000년)>

<n단계 - 1년차(0000년)>

<n단계 - n년차(0000년)>

-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1단계 - 1년차(0000년)>

<1단계 - n년차(0000년)>

<n단계 - 1년차(0000년)>

<n단계 - n년차(0000년)>

- 위탁연구개발기관(책임자):

<1단계 - 1년차(0000년)>

<1단계 - n년차(0000년)>

<n단계 - 1년차(0000년)>

<n단계 - n년차(0000년)>

* 주관/공동/위탁연구별로 작성, 구체적으로 각각 1페이지 이상 기술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구 분	연구개발 내용 (주요 결과물)	추진일정												연구비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단계 - 1년차 (2000)	Ex. 000 측정 기법 확립 (대표 정성성과 또는 정량성과)														
1단계 - n년차 (2000)															
n단계 - 1년차 (2000)															
n단계 - n년차 (2000)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3) 표준화 전략

4)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전략

(2) 투자 계획

(3) 생산 계획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연구수행 기관별로 작성)

1) 안전조치 이행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7. 기타 조치사항 이행계획

1)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시설 번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2) 중요 연구변경 내용 및 선정평가 의견 반영 현황(응모 시에는‘해당없음’기재)

○ 중요 연구변경사항

연차	당초계획	변경내용	변경사유(근거문서 포함)
선정평가 시 (20○○)			

○ 선정평가 의견에 대한 반영 현황

연차	의견	반영사항
선정평가 시 (20○○)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의견 -	

3) 연구노트 관리규정(응모 시에는 ‘해당없음’ 기재, 협약 시 연구수행 기관별로 작성)

연구노트 관리규정 보유여부	관리규정 있음	관리규정 없음
연구노트 작성, 연구보고서 대체 계획	연구노트 작성	연구보고서 대체
		사유: (근거: 연구보고서 대체 관련 문서정보)

- *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훈령 제1332호)」 제8조 의거 연구노트 작성 또는 연구보고서 대체 계획은 연차계획서등록 이전에 연구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 * 관리규정 보유 여부는 농촌진흥청 이외의 연구기관만 작성

4) 기술료 관련 해당 여부

연구개발기관	기술료 징수 ¹⁾	자가실시로 인한 매출 발생 ²⁾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³⁾
주관연구개발기관	○	X	○
제1공동연구개발기관			
...			

- * 연구개발기관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일 경우 모두 X(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포함)
- * 영리기관은 1) 또는/과 2)에 ○ 표시하여야 하며, 둘 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제협약 시 소명하여야 함
- 1)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기술이전 등)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2)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자가실시(창업, 상품화, 공정개선 등) 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 3) 1)과(또는) 2)에 해당하면서 영리기관인 경우

5) 연구개발성과 자가실시 기관의 기술기여도

(단위: %)

구분	매출액발생 1년차	매출액발생 2년차	매출액발생 3년차	매출액발생 4년차	매출액발생 5년차
기술기여도					

- * ‘사업화실적’의 성과 목표가 있는 과제 대상 또는 과제 종료 이후에 사업화실적이 예상되는 과제
- *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와 관련하여 영 제39조2항 및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기여도는 협의에 의하여 조항할 수 있음(기본 값은 100)

본문 1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지식재산권 확보·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외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외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 3) 표준화 전략: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 4) 사업화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 사업화 전략: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 (2) 투자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합니다.
 - (3) 생산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합니다.
 - (4) 해외시장 진출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가능)
 -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외국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7. 기타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첨부목록]

구분	목록	제출여부 (Y/N)
첨부1		
첨부2		
첨부3		
첨부4		
첨부5		

제출 요령 (제출 시 삭제)

- 첨부자료는 기타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유형별 각각 하나의 파일로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 PART 3 >

② 연구개발계획서(본문2)

- 본 서식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입력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식
-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업적**은 국가연구자정보에 관리되는 정보를 활용하므로 사전 등록 필수
- 연구개발기관 실적 및 장비현황은 R&D업무포털에 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가 사전 등록한 정보만 연계
-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은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기관 재무정보 입력 필수)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 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 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종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 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총 참여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연도				1단계		
										1년	n년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없음)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 기관별 작성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영리기관은 모두 작성 필수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구분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년		
			yy년		
		자본금	yy년		
			yy년		
			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단 계	연 차	구분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 ¹⁾)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현금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시험연 구비)	
				현금	현물	소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물		합계
1	1															
	n															
	소계															
n	1															
	n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⁵⁾ (시험 연구비)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현금	일반 ¹⁾	특례 ²⁾	일반 ³⁾	특례 ⁴⁾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곁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협약 체결 당시 계획서 명시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협약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첨부)
 7)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별도)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⁵⁾ (시험연구비)	연구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00)	현금															
	현물															
	소계															
n (‘00)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⁵⁾ (시험연구비)	연구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00)	현금															
	현물															
	소계															
n (‘00)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⁵⁾ (시험연구비)	연구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 비	국제공 동연구 개발비	연구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00)	현금															
	현물															
	소계															
n (‘00)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⁵⁾ (시험연구비)	연구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00)	현금															
	현물															
	소계															
n ('00)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현금받을 수 있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별도)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하고, 심의신청서 제출 필수)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 구축비용이 3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하며, 신규과제선정평가위원회 또는 과제 선정 후 별도로 실시하는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협약에 반영)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 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 ¹⁾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		n단계		계	가중치 (%)
		1년차 (YYYY)	n년차 (YYYY)	1년차 (YYYY)	n년차 (YYYY)		
논문표준화된 영향력지수	SCIE						
	비SCIE						
특허 출원건수	국내						
	국외						
특허 등록건수	국내						
	국외						
신품종 출원건수	국내						
	국외						
신품종 등록건수	국내						
	국외						
기술실시(이전) 등록건수	유상						
	무상						
학술발표	국내						
	국외						
정책활용 등록건수							
영농기술							
영농정보							
생물자원 등록건수							
...							
계							100

※ 연구성과지표 : 별표 7 에 준함

※ 특허 등록, 기타지식재산권 등록, 신품종 등록, 기술이전(유상)을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특허, 기타지식재산권 및 신 품종 출원과 연계하여 설정한다.

※ 단계없는 과제는 연도별로 작성

※ RFP의 최소 요구성과 이상을 계획하여야 하며, 내외부과제의 경우 연구비 총액 대비로 내부/외부 최소요구성과를 산정하여 내부/외부 각각의 달성목표만 IRIS 성과지표탭에 입력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해당시 작성)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_J)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_J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_J 주요 결과물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_J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기타 참고자료 및 필수 제출자료 서식은 '(농진청) 관련 서식 모음' 참조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를 대표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를 대표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외부)”,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정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 (2) 연구시설 운영·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 및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